

협력사 행동규범

목차

1. 개요	4
1-1. 배경 및 목적	4
1-2. 적용 범위	4
1-3. 협력사의 의무와 책임	4
2. 기업윤리	5
2-1. 투명경영 및 반부패	5
2-2. 이해상충 방지	5
2-3.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5
2-4. 품질 경영	5
2-5. 수출관련 법/규제 준수	6
2-6. 정보보호	6
2-7. 책임있는 자재 구매(분쟁/책임 광물 사용 금지)	6
2-8. 공급망 추적	7
3. 노동 및 인권	7
3-1. 차별금지	7
3-2.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7
3-3. 인도적 대우	7
3-4. 결사의 자유 보장	8
3-5. 아동노동 금지	8
3-6. 강제노동 금지	8
4. 안전·보건	8
4-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8
4-2.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관리	8
4-3. 비상상황 대응	9
4-4. 사고 관리	9

4-5. 안전 진단	9
4-6. 보건 관리	9
5. 환경경영	10
5-1. 환경경영체계	10
5-2. 환경 인허가 취득·유지·관리	10
5-3. 오염방지 및 자원사용 저감	10
5-4.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	10
5-5. 유해물질 관리	10
5-6. 폐기물/폐수 관리	11
5-7. 삼림 벌채 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	11
6. 경영시스템	12
6-1. 규범 준수 성명서	12
6-2. 추진 거버넌스 구성	12
6-3. 리스크 관리	12
6-4. 목표 수립	12
6-5. 교육·훈련 및 의사소통	12
6-6. 공급망 관리·감독	12
6-7. 규범준수	13
7. 협력사 행동규범 추진체계	13

1. 개요

1-1. 배경 및 목적

최근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로의 전환 등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혁신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넥센타이어 및 그 계열회사(이하 통칭하여 “넥센타이어”)는 책임있는 비즈니스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 규범,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ILO 핵심협약 등 글로벌 규범을 기반으로 본 행동규범을 수립하였습니다.

넥센타이어는 본 행동규범을 통하여 넥센타이어의 비즈니스 및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ESG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법/규제를 준수하여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1-2. 적용 범위

본 행동규범은 넥센타이어 및 그 계열회사(이하 통칭하여 “넥센타이어”)의 모든 협력사에 적용됩니다.

1-3. 협력사의 의무와 책임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향후 개정되는 행동규범을 포함) 및 관련 법/규제를 준수하고 적극 이행해야 하며, 자신의 협력업체 및 그 하위 공급망도 본 행동규범 및 관련 법/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또한 넥센타이어가 본 행동규범 준수여부를 점검/평가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넥센타이어(또는 넥센타이어가 지정한 외부기관)이 협력사를 방문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는 협력사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넥센타이어는 그 위반으로 인해 미치게 될 부정적인 사회, 환경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해당 협력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절한 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넥센타이어와의 원활한 거래 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기업윤리

2-1. 투명경영 및 반부패

- 1) 협력사는 기업윤리와 관련한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넥센타이어 윤리강령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준수할 책임을 가집니다.
- 2) 협력사 임직원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상납, 청탁, 선물 제공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하고,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2. 이해상충 방지

- 1) 협력사는 부당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이익을 위해 뇌물 또는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업기회를 획득 및 유지하거나 제 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2-3.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 1) 협력사는 일반적인 시장경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국가의 경쟁, 독점금지 등 관련 공정거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지원 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 2) 협력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넥센타이어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 부당한 이익, 편의의 제공을 제안, 약속,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습니다.
- 3) 협력사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넥센타이어의 임직원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 부당한 이익, 편의의 제공을 제안, 약속, 요구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넥센타이어 윤리경영실로 제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2-4. 품질 경영

- 1) 협력사는 넥센타이어에 공급되는 완제품에 위조 부품 및 재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2) 품질관리를 위한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하여, 넥센타이어의 고객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재료 수급에서부터 제품의 출고까지 다양한 품질 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넥센타이어 또는 넥센타이어의 고객으로부터 품질 경영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는 경우 이에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합니다.

2-5. 수출관련 법/규제 준수

- 1) 협력사는 수출통제, 경제제재와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수출통제, 경제제재의 대상이 되는 국가, 지역, 법인, 단체, 개인 등과 거래해서는 안됩니다.
- 3) 협력사는 제품 덤핑판매를 하지 말아야 하며, 관세 회피를 위하여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보고하는지 여부 등 지속적으로 관세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4)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시 넥센타이어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2-6. 정보보호

- 1) 협력사는 사업자 소재지의 회계기준과 관련법규에 따라 회계 기록을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의 거래 절차는 투명해야 하고, 절차 내역을 협력사의 회계장부 및 업무 기록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자신의 정보보안 정책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임직원, 협력사, 고객의 개인 정보, 재무, 건강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을 준수하며, 이를 위한 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4) 협력사는 합법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임직원, 고객, 공급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5) 협력사는 지적 재산, 영업 비밀, 상표권과 기밀 정보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 이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2-7. 책임있는 자재 구매(분쟁/책임 광물 사용 금지)

- 1) 넥센타이어에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협력사는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 원산지와 제련소 또는 이후 공급망 내 본 행동규범에서 규정하는 주요 부문의 중대 리스크가 식별되는 경우 해당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넥센타이어가 분쟁지역 광물의 원산지 확인을 포함하여 공급망 내 분쟁광물 사용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넥센타이어는 협력사 현장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분쟁지역: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앙골라, 잠비아, 탄자니아, 브룬디, 르완다, 우간다의 10개 지역을 의미하며, 규제 대상 광물(분쟁광물)은 상기 10개 지역에서 채굴된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지정합니다

2-8 공급망 추적

- 1) 협력사는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의 원산지를 추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유럽연합 삼림벌채방지법(Regulation (EU) 2023/1115, 이하 “EUDR”)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는 EUDR의 기준에 따라 추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연고무를 공급하는 협력사는 공급망 추적 및 실사에 관한 GPSNR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제품의 생산 위치 및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넥센타이어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3. 노동 및 인권

3-1. 차별금지

- 1)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 대우나 비합리적인 차별을 없애고,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를 대우해야 합니다.
- 2) 고용 관행(채용,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승진,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출신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가입, 국적, 결혼 여부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의료검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장애인, 여성기업인, 인종 등)가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4) 협력사는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따라 소수민족과 원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3-2.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 1)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와 급여/공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의 초과 근로 시 사업장이 속한 노동 법규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생계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3. 인도적 대우

- 1) 협력사는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4. 결사의 자유 보장

- 1) 협력사는 근로자가 사업자 소재 지역의 노동 법규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단체 협약 및 평화적 집회/시위를 할 수 있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3-5. 아동노동 금지

- 1) 협력사는 15세 미만의 아동 또는 해당 법정 최소 고용 연령에 미만인 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아동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협력사는 아동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포함)와 거래하지 않아야 하며, 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6. 강제노동 금지

- 1)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장 노동 법규 이상의 근로를 요구하지 않고,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연장근로)도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는 해당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3-7. 사설 및 공공 보안업체

- 1) 협력사는 사설 및 공공 보안업체 고용 시 관련 업체와 근무자가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안전·보건

4-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1) 협력사는 사업장 소재 지역 혹은 국가의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운영 중 안전보건 관련 모든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안전보건 확보와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정책, 경영방침, 목표, 세부 관리 프로세스,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 3) 전 사업장에서 불법 약물의 사용, 소유, 배포와 판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 4) 협력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적절한 방식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사용 언어를 고려하여 산업 안전 기준을 안내 및 배포해야 합니다.

4-2.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관리

- 1) 협력사는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적절하게 보호하며, 꾸준히 시설물과 위험요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사업장 내 필요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정기적인 안전성 여부와 안전 위해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임직원이 상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물리적 방호장비, 안전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고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안전훈련 및 작업절차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4-3. 비상상황 대응

- 1) 협력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안전보건 관련 비상사태를 사전에 식별하고 평가해야 하며, 비상사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상황 발생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자사 안전보건 정책 또는 세부 지침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 2)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며,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화 장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안전보건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사업장 내 설비 및 시설물의 정상 작동을 정기적으로 확인 하며, 점검 이력을 문서로 관리 합니다.

4-4. 사고 관리

- 1) 협력사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및 추적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관리시스템 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 원인 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근로자들에게 사업장 내 위험 또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취급 정보를 교육, 훈련시켜야 합 니다.
- 3) 협력사는 유해물질로 구성된 제품을 공급 시 사업장 소재의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취급 관련 정보가 담긴 문서(제품 정보, 안전보건자료, 사용 및 노출 시나리오 등)를 넥센타이어에 게 제공해야 합니다.
- 4) 협력사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제품의 건강, 안전 및 환경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품 외관에 건강,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정보를 표시 라벨로 부착하여 공급해야 합니다.

4-5. 안전 진단

- 1) 협력사의 사업장 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협력사는 적절한 시정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 다. 또한 필요한 경우, 즉각 넥센타이어에 고지해야 합니다.
- 2) 협력사가 보건·안전 규정 및 법을 위반함으로써 업무정지 혹은 상당한 벌금을 부과 받았거나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각 넥센타이어에 고지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임산부와 수유부, 연소자를 위한 작업 환경에 배치하지 않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줄이 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유기 여성 근로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4-6. 보건 관리

- 1)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및 보관시설, 식당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하고, 합리적인 수 준의 개인 공간과 냉난방 및 환기시설, 조명, 안전 표지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임직원의 직업성 질병 예방과 건강한 삶을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 관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5. 환경경영

5-1. 환경경영체계

- 1) 협력사는 사업장의 소재 지역 및 국가의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정책, 경영방침, 목표, 세부 관리 프로세스,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환경 영향을 식별하고 관리해야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제품 및 공정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5-2. 환경 인허가 취득·유지·관리

- 1) 사업운영 중 환경 관련 모든 인허가(예: 배출/방지시설의 설치/운영/변경 신고)를 취득하고 최신 개정본 기준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5-3. 오염방지 및 자원사용 저감

- 1) 협력사는 천연자원(물, 원자재 등)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제품, 공정/기술의 개발과 채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공정개선, 원료 대체, 자원보존, 재활용/재생 에너지사용 등으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5-4.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

- 1) 협력사는 제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분석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수집된 정량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사업장 내의 각종 설비 가동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 소음, 폐수 및 폐기물을 식별하고, 측정하여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해 물질 배출에 주의를 기울여 배출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5-5. 유해물질 관리

- 1) 협력사는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 및 기타 물질을 파악/기록하고 안전하게 취급, 보관, 재활용 또는 재사용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여 제공하며, 특정 물질의 사용과 취급을 금지 또는 규제하는 사업장 소재지역 및 현지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6. 폐기물/폐수 관리

- 1) 협력사는 사업장 내 발생하는 폐수, 고형 폐기물 등 폐기물의 종류, 특성, 발생량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배출해야 하며,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과 방출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수자원 사용량의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자체적으로 폐수 관리 절차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5-7. 산림 벌채 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

- 1) 협력사는 사업 전반에 걸쳐 산림 벌채를 최소화해야 하며, 또한 정기적으로 산림 벌채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생물다양성 보존 지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운영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영향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사업장 소재지 내에 동물 보호를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시 소재지 내의 법령과 국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 4) 협력사는 EUDR의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하위 협력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하위 협력사와 함께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 및 공급 원재료/제품이 EUDR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와 같이 EUDR의 요구사항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5) 협력사는 EUDR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제도를 통해 협력사 및 하위 협력사의 사업운영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6. 경영시스템

6-1. 규범 준수 성명서

- 1)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비롯하여 관련 법률 및 넥센타이어의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본 규범에 명시된 기업윤리, 인권/노동, 안전보건, 환경 부문과 관련된 경영 요소를 기업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2) 협력사의 최고 경영진은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신년사,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전사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사업보고서/기업 홍보물 등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6-2. 추진 거버넌스 구성

- 1) 협력사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문별 실무자 선임을 권장합니다.
- 2) 협력사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문별 관리자 선임을 권장합니다.

6-3. 리스크 관리

- 1)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중대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6-4. 목표 수립

- 1)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언급한 주요 분야에 대한 정성/정량적인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통해 정기적으로 달성 현황을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성과를 개선해야 합니다.

6-5. 교육·훈련 및 의사소통

- 1) 협력사는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이행하고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자와 임직원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 2) 협력사의 정책, 지침, 기대사항 및 성과와 관련된 분명하고 명확한 정보에 대해 핵심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 대한 임직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6-6. 공급망 관리·감독

- 1) 협력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 계약을 맺은 자신의 협력업체 및 그 하위 공급망에게 윤리,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분야의 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2) 협력사와 거래하는 모든 업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본 규범의 요구사항을 자신의 협력사 및 그 하위공급망에 전달하고 해당 업체가 이를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거래업체가 윤리,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 리스크 등을 인지한 경우, 거래업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리스크를 해소할 수 없거나 리스크 완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거래업체와의 거래 중단도 포함됩니다.

6-7. 규범준수

- 1)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상 의무와 관련된 현지 법/규제를 위반함으로써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 받았거나 상당한 벌금 또는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형사적 책임이 인정된 경우, 이를 즉각 넥센타이어에 고지해야 합니다.

7. 협력사 행동규범 추진체계

- 1)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내용을 임직원에게 안내 및 교육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넥센타이어 임직원의 특정 행동이 본 지침과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을 경우, 넥센타이어의 윤리경영실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 3) 넥센타이어는 협력사의 제보 및 문의 내용에 대해 보안을 엄수하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본 규범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으며, (주)넥센타이어 대표이사인 승인 아래 시행됩니다.

넥센타이어(주) 대표이사 김 현 석



문서명	넥센타이어 협력사 행동규범	버전	3.0
제정일자	2020. 08. 07	개정일자	2024. 11. 01
제·개정부서	구매팀	관리부서	ESG팀

< 개정 이력 >

버전	제/개정일자	제/개정 내용	작성부서	관리부서
V1.0	2020. 08. 07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구매팀	ESG팀
V2.0	2023. 06. 26	협력사 행동규범 개정	구매팀	ESG팀
V3.0	2024. 11. 01	협력사 행동규범 개정	구매팀	ESG팀